



법제 Q&A

목 단위 이하 부분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려면 법령
형식 및 개정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여기에 실린 내용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며, 법령 입안 · 심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검토
·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목 단위 이하 부분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려면 법령 형식 및 개정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목’에서 더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1),2),3)···을, 1),2),3)···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나),다)···를 사용하여 법령을 작성합니다.

【법령 형식】

법률 제 제 호 (법령의 종류와 공포번호: 신명조 14pt)

Enter ↵

○○○법

(법률제명: 가운데 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Enter ↵

제 조() 제 1

(신명조 14pt)

제 2

제 1

제 가

제 1

제 가

Enter ↵

부 칙

(부칙: 가운데 정렬, 신명조 14pt, 진하게)

Enter ↵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신명조 14pt)

이후 목 단위 이하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개정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제 조 제 항 제 호 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을/를 “△△”로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법제 Q&A

Q. 법률에 정의된 용어에 대해 하위법령에 정의 규정을 두어도 되나요?

A.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동일한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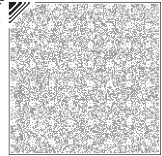
법률에 나오는 용어 정의를 하위법령에서 다시 정의하는 경우 법률에 위임 없이 적용 범위를 정하는 취지가 될 수 있고, 법률에 규정된 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하위법령이 동시에 개정되지 않으면 법률과 하위법령에서의 용어 정의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Q.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와 개별법상 제척기간 규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개별법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정한 제재처분¹⁾에 대해서는 제척기간(5년)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개별법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23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1) ①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② 등록 말소, ③ 영업소 폐쇄, ④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참고〉 개별법과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적용 관계

①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별법 제00조(제척기간)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④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개별법상 제척기간(3년)과 기산점이 우선 적용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행정기본법」 제23조가 보충 적용되는 경우

개별법 제00조(등등록취소 등)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 개별법에서 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닌 제재처분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 보충 적용 → 개별법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척기간(5년) 적용
같은 법 제01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00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제02조(제척기간)	
② 시·도지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이 지난 경우에는 제0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보충 적용 → 개별법에 규정된 사유 외에도,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 보충 적용



법제 Q&A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3조

제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23. 3. 24.)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Q.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령등의 변경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이 완화되면 반드시 변경된 법령등이 적용되나요?

A. 기존 판례는 법령의 변경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신법을 적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었으나,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등이 개정되어 제재처분이 없어지거나 그 기준이 가벼워지면 변경된 법령등이 적용되어 제재처분을 받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아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 시행일('21. 3. 23.)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주의)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 단서는 2021년 3월 23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

〈참고〉 제14조제3항 적용관계

● ○			
위반행위 요건 성립 (구법)		새로운 법령 시행 (신법, 제재처분 기준 변경)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
구분	구법	신법	적용 규정
제재처분 기준	요건에 해당	요건에 해당 X	신법 (「행정기본법」 §14③ 단서)
	가벼움	무거움	구법 (「행정기본법」 §14③ 본문)
	무거움	가벼움	신법 (「행정기본법」 §14③ 단서)

따라서, 법령등을 개정하는 법제 업무 담당자의 경우 제재처분의 기준을 완화하면서 구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구법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에 반드시 별도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법령등의 개정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있고 강화되는 것도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 Q&A

또한, 제재처분의 집행 업무 담당자도 개정된 법령등의 부칙에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위법한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의 “제재처분의 기준”에는 제재처분의 요건, 제재처분의 강도, 제재처분의 감경가중 기준 등이 모두 포함되나, 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인 행정청의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부칙 제3조

제2조(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2021. 3. 23.)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